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의안번호 : 제853호
- 나. 제안자 : 이병도 의원 외 15명
- 다. 제안일 : 2023. 5. 30.
- 라. 회부일 : 2023. 6. 5.

2. 제안이유

- 「청년기본법」의 개정(2023.3.21.)에 따라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례에 운영비지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청년지원기관의 운영비를 포함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20조제6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23.6.8. ~ 6.12.) 결과 : 의견 없음
-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미래청년기획단) : 원안 가결

5. 검토 의견

가. 조례안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년 기본법」의 개정(2023.3.21.개정, 2023.9.22.시행)으로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의 근거와 위탁근거, 경비지원 근거가 명시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청년지원기관 및 청년시설에 대한 경비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제6항은 자치구에서 ‘서울청년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부칙으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운영) ① ~ ⑤ (생략) ⑥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청년지원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자치구에서 ‘서울청년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u>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u>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운영) ① ~ ⑤ (생략) ⑥ _____ _____ _____ —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_____

나. 청년기본법 개정 사항

- '23.3.21일 개정된 「청년기본법」은 체계적인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장을 신설하고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청년지원센터의 지정, 청년정책 통합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였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은 「청년기본법」 제3조제7호 “청년시설” 정의, 같은 법 제24조의2(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 및 같은 법 제24의3(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음

「청년기본법」 (2023. 3. 21. 개정, 2023. 9. 22. 시행)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4조의2(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을 청년단체 또는 청년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기여한 법인·단체(이하 “청년단체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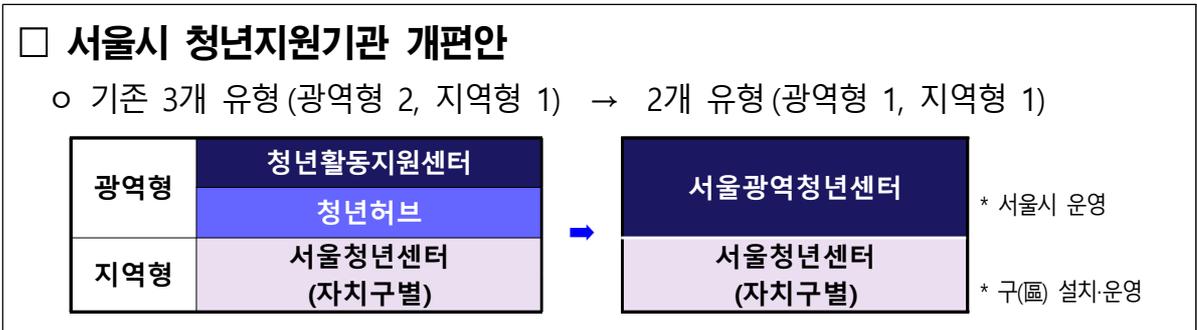
제24조의3(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등의 청년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절차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서울시 청년지원기관 및 청년시설 운영 현황

- 서울시 청년정책 발전과정에서 여러 유형의 청년지원기관과 청년공간 등이 별도의 체계 없이 신설, 확충되어 균질한 청년정책 집행과 효율적인 역할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청년지원기관의 체계 개편과 재구조화에 대한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음

- 미래청년기획단에서도 2021년 청년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재구조화TF'를 운영하는 등 청년지원기관 및 청년공간 재구조화를 추진해 왔으며, '22.11월 '서울 청년공간 기능혁신 및 재구조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1) 이에 따라 청년지원기관을 '서울광역청년센터'와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로 개편하여 광역-지역 구조로 단순화하고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는 중임



- 현재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25개 자치구 중 15개 자치구에 운영되고 있으며(시 자체 운영 4개)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자치구별로 1개소의 청년센터 운영을 목표로 단계별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청년센터 설치현황>

- 청년센터 운영 자치구 : 15개 (성동, 광진, 동대문,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강서, 금천, 영등포, 관악, 서초, 강동)
 - ※ 서울시 자체운영 센터(4) : 동대문, 강서, 금천, 서초
- 청년센터 미운영 자치구 : 10개 (종로, 중구, 용산, 중랑, 성북, 양천, 구로, 동작, 강남, 송파)
 - ※ 미운영 자치구 구분
 - ① '무중력지대' 전환 대상 : 2개구(성북, 양천)
 - ② 미설치 : 7개구(종로, 중구, 중랑, 구로, 동작, 강남, 송파)
 - ③ 활동지원센터(광역센터) : 1개구(용산) ※ 활동지원센터에서 청년센터 역할도 겸함

구 분	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울청년센터	15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서울 청년공간 기능혁신 및 재구조화 추진계획 (미래청년기획단-30274, '22.11.11)

<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설치 계획 >

□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설치 계획	'20~'22	12개	'23~'24	17개	'25~'28	25개
· 무중력전환 · 신규조성	12개 센터 운영중		+5 (도봉, 양천, 영등포, 성북, 서대문)	→	- +8 (종로, 중구, 용산, 중랑, 구로, 동작, 강남, 송파)	

① '20~'22년 : (12개구) 서울청년센터 설치 완료(운영중)

② '23~'24년 : (5개구) 무중력지대를 청년센터로 전환·설치
 - 무중력지대 전환 대상 자치구 중 추진의사 있는 자치구(양천, 성북) ※ 지속 발굴 추진

③ '25~'28년 : (8개구) 미설치 자치구에 청년센터 신규 설치
 - 지역별 수요점검, 성과 등을 고려해 단계적 신규설치 확대(종로, 중구, 용산, 중랑, 구로, 동작, 강남, 송파)
 ※ 용산구에는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중('22.8.)으로, 향후 운영 현황 고려하여 청년센터 설치 여부 결정

라. 청년지원기관 확충 및 지원 필요성 검토

-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청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각종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²⁾ 서울시 청년 인구 비중은 23.7%, 전국 청년 인구 대비 서울시 청년 인구는 22% 달하고 있어³⁾ 청년정책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최근 고립·은둔청년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⁴⁾로 떠오르는 등 지역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청년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져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확대 설치와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됨
-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는 지역 생활권 기반의 청년지원기관으로 구립 시설의 성격이 강하므로 자치구 설치·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서울시 청년정책을 시행·전달하고 시-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자치구별 재정 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비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2) '23.5월 청년층 고용률 47.6% (15~64세 고용률 69.9%), 청년층 실업률 5.8% (전체 2.7%) [5월 고용동향, 통계청]
 3) '23.3월 기준 서울특별시 청년(19~34세)인구 2,234,110명 (서울시인구 9,426,404, 전국청년인구 10,173,414)
 4) 서울시 만 19~39세 고립·은둔 청년 비율 4.5% (12만 9천명) ['23.1월 서울시 고립·은둔 실태조사]

- 현행 조례에 따르면 ‘자치구에서 ‘서울청년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을 근거로 자치구 ‘서울청년센터’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
 - 서울시는 2023년 자치구 운영 ‘서울청년센터’ 11개소에 사업비 용도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센터당 1억 11백만 원, 시·구 매칭비율 2:8) 자치구는 운영비, 인건비 등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 1개소의 ‘서울청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센터 미설치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나, 자치구에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현재의 재정 부담 비율 조정과 보조금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서울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강동, 관악, 광진, 노원, 마포, 성동, 은평, 강북)의 경우, 2021년에는 운영비를 시비로 지원받았으나 2022년 예산편성 시 서울시에서 운영비 부분은 전액 감액하고 사업비만 지원하여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급증한 바 있어 해당 자치구들이 센터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서울청년센터’를 포함한 서울시 청년지원기관들의 예산을 분석하면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총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운영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수 있음

< 청년지원기관 예산 구성 >

구 분	총예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청년활동지원센터 (광역)	2,413	1,310 (54 %)	405 (17 %)	698 (29 %)
청년허브 (광역)	1,566	779 (50 %)	257 (16 %)	530 (34 %)
서울청년센터 금천	587	293 (50 %)	126 (21 %)	168 (29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587	293 (50 %)	124 (21 %)	170 (29 %)
서울청년센터 서초	587	298 (51 %)	119 (20 %)	170 (29 %)
서울청년센터 강서	531	264 (50 %)	113 (21 %)	154 (29 %)

※ 서울시 운영 서울청년센터(4) : 금천, 동대문, 서초, 강서 ※ 2023년도 예산편성 제출 자료 참고

마. 조례안 검토 내용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 개정(2023.3.21.개정, 2023.9.22. 시행)을 반영하여 현행 자치구 ‘서울청년센터’ 지원 근거 규정인 현행 조례 제20조제6항을 개정하여 ‘서울청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먼저, “지방보조금 교부 대상 여부를 검토”하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등 4가지 경우에 한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 「청년기본법」 제24조2 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은 자치사무라⁵⁾고 하겠으며, 같은 법 제2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지방보조금 교부의 근거라고 본다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음
-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면,
- 앞서 “청년지원기관 확충 및 지원 필요성 검토”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확대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으며 자치구의 보조금 지원 요청이 지속되고 있는 점, ‘서울청년센터’ 운영비 비중이 높아 그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음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서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5) 「청년기본법」 제24조의2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규정한 만큼, 제17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하여 '서울청년센터'에 보조금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에 지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 제6항에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에 대한 지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단과 후단⁶⁾을 분리해 새로운 조항으로 규정하는 방안과 ▲유사 규정인 제21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제1항⁷⁾에 대한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음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또한, 보조금을 지출하는 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출 근거를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규정함은 물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도 규정해야 하므로, 사업추진시 자치구의 조례를 면밀히 확인하여 근거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고 지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⁸⁾

6) •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20조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년지원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자치구에서 '서울청년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20조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년지원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자치구에서 '서울청년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7)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21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 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청년기본법」 (2023. 3. 21. 개정, 2023. 9. 22. 시행)

제24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정의) 제7호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을 청년단체 또는 청년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기여한 법인·단체(이하 “청년단체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다음으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 목적으로 교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기준>(‘21.10.시행)에 따르면, 「청년기본법」 제24조의2는 ‘운영비 지원 규정이 명확한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법령 소관 부처(부서)의 법령해석이 필요함
-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관련 규정에 대하여 「청년기본법」 소관 부처인 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의 해석을 받았으며 이에 따르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운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제2항 중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한하며 조례와 규칙은 해당하지 않음
(법제처 해석례, 대법원 판결례 등 참조)

<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기준 >

① 운영비 지원 규정이 명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

- (규정형식) 관련 법령의 조문에 '~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운영에 필요한 경비',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 등 운영비 지원 규정이 명시된 경우
- (적용기준) 별도의 법령해석 없이 운영비로 보조금 지원 가능

② 운영비 지원 규정이 명확한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규정형식) 관련 법령의 조문에 '~그 활동(시설)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지원·육성에 필요한 비용 지원', '~활성화를 위한 예산 등 지원', '~필요한 자금의 일부 지원', '~의 관리에 드는 경비 지원' 등 운영비 지원이 아닌 다른 용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적용기준) 법령의 소관 부처(부서)에서 관련 규정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법령해석을 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

▷ 국무조정실 법령해석 (국무조정실 정책협력관, '23.5.16. 및 5.22. 답변)

- 「청년기본법」 제24조의2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청년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광역자치단체가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고 해석됨
- 예) 강동구에서 위탁하는 청년시설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예산을 보조하는 것에 문제없음
- 「청년기본법」 제24조의3 제1항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운영비·인건비·사업비 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가능
- 자치구 청년센터 경상보조금은 '지역별 청년센터 설치·운영 사업'의 부분으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포함됨이 타당

- '22.3월 개정된 「청년기본법」 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인 '23.9.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이번 일부개정조례안도 부칙으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일을 조정하고 있어 법령상 근거 조항의 효력 유무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바. 종합 의견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의 개정(2023.3.21.개정, 2023.9.22.시행)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청년지원기관 및 청년시설에 대한 경비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역 생활권 기반의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의 설치를 통한 청년지원기관의 확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현행 조례 규정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확대하여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의 필요성도 인정됨
- 다만 법률 적합성 원칙, 예산·재정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등 종합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첫째, 개정 후 시행일이 남은 「청년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만큼 본 조례의 시행일을 상위법의 효력발생일 이후로 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같은 법 제24조 제4항에서 청년시설에 대한 대통령령의 제정을 규정하고 있어 향후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 조례와의 정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
- 둘째,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기 위한 관련 법령과 기준, 방침을 철저히 확인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며, 자치구의 ‘서울청년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지원인 경우 그 운영 상황을 상세히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는 자치구가 자체 운영하고 서울시는 이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사업 보조가 되지 않도록 지원 금액, 시구 매칭비율, 지원 기간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서울 청년공간 운영 현황 ('23.5월 기준)

	시 설 명	소재지	규모	인력	운영방법	수탁기관	위탁기간	개관	
1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용산구 원효로 97길 15	2,281㎡	25	서울시 민간위탁	(재)서울현대교육재단 (사)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21.7.1.~'23.12.31. *재위탁 1회	'16.7.	
2	서 울 청 년 센 터 (15)	관악	관악구 신림로 91, 302호	329㎡	6	자치구 민간위탁	(사)꿈지락네트웍	'19.7.1.~'24.9.30. *재계약 1회	'20.2.
3		금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0 G밸리창업복합센터 1~2층	345㎡	6	서울시 민간위탁	(재)서울현대교육재단	'23.3.1.~'23.12.31. *재위탁 1회	'20.2.
4		강동	강동구 올림픽로 796, 4층	403㎡	6	자치구 민간위탁	미담장학회	'23.1.1.~ '25.12.31. *재위탁 1회	'20.5.
5		은평	은평구 통일로 67길 9, A동 2층 불광로1길 2-4, B동 1~4층	545㎡	6	자치구 민간위탁	(사)희망유니온	'23.1.1.~'25.12.31. *재위탁 1회	'20.6.
6		동대문	동대문구 왕산로 210	481㎡	6	서울시 민간위탁	(사)희망유니온	'23.3.1.~'23.12.31. *재위탁 1회	'20.12.
7		노원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05 노원금융타워 9층	331㎡	6	자치구 민간위탁	(사)청소년과나란히	'20.9.1.~'23.8.31.	'20.9.
8		성동	성동구 왕십리로 350 4~5층	314㎡	6	자치구 민간위탁	성동청년플랫폼	'22.10.1.~'25.9.30. *재위탁 1회	'20.12.
9		마포	마포구 월드컵로1길 14, 지 상 1층 제P101호	264㎡	6	자치구 민간위탁	(사)플레이시드스쿨	'23.2.1.~'25.12.31. *재위탁 1회	'20.12.
10		광진	광진구 능동로 245, 2~3층	385㎡	6	자치구 민간위탁	사회적협동조합 함께시작	'20.1.1.~'23.12.31 *재계약 1회	'21.1.
11		서초	서초구 반포동 19-11	556㎡	6	서울시 민간위탁	(사)청년여성 문화원	'21.6.1.~'23.12.31.	'21.10.
12		강북	강북구 노해로23길 123(수 유동) 1~3층	331㎡	6	자치구 민간위탁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22.1.26.~'24.12.31	'22.4.
13		강서	강서구 화곡동 1170	602㎡	6	서울시 민간위탁	미담장학회·청년 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씨드콤플	'22.3.21.~'23.12.31	'22.4.
14		영등포	당산로 83, 2층	502㎡	4	자치구 직접운영(한시)	구의회 등의 시 공개모집 예정('24년)		'23.2
15		도봉	도봉구 마들로11길 75	440.97㎡	6	자치구 위수탁 업무협약	도봉문화재단	'23.1.1.~'25.12.31.	'23.5.
16		양천	양천구 오목로 359	386㎡	6	자치구 민간위탁	서울지역사회교육협의회	'23.5.1.~'26.4.30.	'23.5.
17	청년허브	은평구 통일로 684	1,786㎡	14	서울시 민간위탁	사단법인 씨즈	'21.1.1.~'23.12.31. *재계약 1회, 재위탁 1회	'13.4.	

□ 운영개요

- 운영시간 : 월~금 10~22시, 토요일 10~17시 운영 권장
- 인력구성 : 센터장(1), 기타 종사자 5명

직위/직급	주요업무	인원
센터장(팀장)	○ 센터총괄, 대외협력	1명
선임매니저	○ 사업총괄(예산 및 행정)	1명
매니저	○ 종합상담 운영(전담인력) 1, 정보집적 및 콘텐츠 구성 1	2명
매니저	○ 커뮤니티 사업 및 공간운영 1, 지역 자율사업/홍보 1	2명

○ 주요 사업내용

구분	사업명	세부내용	비고
필수	종합상담 및 자원연계	오프라인 종합상담 운영, 온라인 채널 운영	<서울청년센터 오랑 사업운영 매뉴얼> 준수
	청년지원정보 제공	권역 내 청년지원정보 집적(지역정보) (지역)정보 제공 서비스 운영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모임 운영 및 지원(ex. 관계망형성형, 모임지원형 등)	
	청년공간 운영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자율	지역자율 프로그램	지역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사업비 내 최대 20% 편성

□ 권역별 현황 : 12개소를 거점으로 인근 자치구 지원

